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
발의자 : 우재준 · 김위상 · 이성권

서천호 · 서일준 · 박충권

김소희 · 김용태 · 이달희

배준영 · 김상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,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 · 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,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.

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,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,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.

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

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
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
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5 신설).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5(석유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
 2.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
 3. 그 밖에 폐업 및 사업전환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2조의5(석유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</u></p> <p><u>2.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</u></p> <p><u>3. 그 밖에 폐업 및 사업전환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